

국고대리점 업무편람

2013. 10.

이 국고대리점 업무편람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http://www.bok.or.kr> → 금융시스템 → 국고·증권제도 → 국고업무자료)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여 백)

I. 국고금의 수납

1. 수납 근거	1
2. 수납기관	
가. 국고금 수납기관	1
나. 한국은행의 국고금 취급조직	2
3. 수납 가능 국고금의 종류	
가. 수입금	3
나. 지출반납금	4
다. 수입금출납공무원이 납부하는 국고금	4
4. 수납 절차 및 납부서류의 확인	
가. 수납 절차	5
나. 납부서류 기재사항의 확인	6
다. 수납한 국고금의 취소 가능 여부	8
5. 수납내역의 전산입력	
가. 입력 방식	9
나. 입력 항목별 유의사항	12
6. 국고금 수납 자금의 처리 및 결제	15
7. 증권에 의한 국고금 수납	
가. 증권에 의한 수납	15
나. 수납 증권 부도 시 처리	18
8. 지방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부가국세)의 처리	22

II. 국고금의 정정

1. 정정의 의미와 처리 주체	
가. 국고대리점의 신청에 의한 정정	24
나. 정정업무 처리 주체	25
2. 국고대리점의 정정 신청과 통할점의 처리	
가. 국고대리점의 정정 신청	26
나. 통할점의 정정 처리	27

III. 국고금의 사고 처리

1. 의의	32
2. 사고의 보고 및 처리	
가. 사고 보고	32
나. 사고의 처리	32

IV. 국고금 수납 자금의 결제

1. 의의	35
2. 조기결제	
가. 조기결제 대상	36
나. 실시방법	36
3. 조기회수	
가. 조기회수 대상	38
나. 실시방법	38

V.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1. 의의	39
2. 국고대리점의 자체 점검	39
3. 통할점의 요청에 의한 점검	39

VI. 수납증빙의 처리 및 영수증명

1. 수납증빙 등의 처리	41
2. 수입금에 대한 영수증명	42

부록 금융회사의 국고예금업무

1. 의의	47
2. 거래대상 금융회사	47
3. 거래방법	
가. 계좌의 개설, 변경 및 폐지	48
나. 계좌의 입·출금	52
다. 계좌 정보(신설·폐지 등) 및 거래내역의 한국은행 앞 전송	54
라. 이자 지급	54
마. 정정	55
바. 반납	56

별첨

1. 한국은행 국고통할점 및 담당 지역	57
2. 주요 국세 납기 일람표	59

I. 국고금의 수납

1 수납 근거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과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국고금 출납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 국고금 수납사무를 위임

2 수납기관

가. 국고금 수납기관

- 국고금은 수입금출납공무원(원칙적 수납기관), 한국은행(최종 수납기관), 국고대리점(한국은행 대리인 자격),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납부분에 한함)에서 수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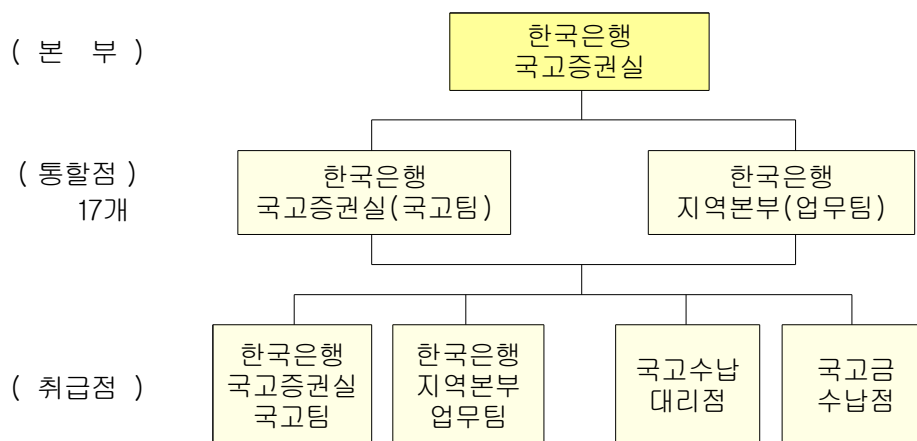
국고금 수납기관 및 수납대상 국고금

수납기관	수납대상 국고금
수입금출납공무원	소속 수입징수관의 수입금*
한국은행 및 국고대리점	금고은행에 예탁하는 공공기금을 제외한 모든 국고금
국고금납부대행기관	한국은행에서 수납할 수 있는 국고금 중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국고금
우체국	한국은행에서 수납할 수 있는 모든 국고금 및 국고예금(관서운영경비, 선사용자금)
금고은행	해당 은행이 예탁받고 있는 공공기금
금융회사	국고예금

* 「국고금 관리법」상 원칙적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수입금출납공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음

나. 한국은행의 국고금 취급조직

- 한국은행은 국고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와 지역별로 국고대리점을 통할하는 통할점, 국고금 수납(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취급점으로 구분



- 본부(한국은행 국고증권실) : 국고업무에 관한 기획(국고관련 규정의 제·개정, 국고업무 개선방안 검토 및 국고전산화 추진 등), 국고전산

참고 1 국고대리점 제도

- 한국은행의 영업점이 17개에 불과하여 겪을 수 있는 국민들의 국고금 납부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융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사무를 위탁
 - 국고대리점은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
 - **국고수납대리점** : 한국은행이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국고금 수납사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금융회사(은행) 영업점(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산림조합의 중앙회 포함)
 - **국고금수납점**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산림조합의 중앙회 등이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산하의 회원조합 또는 회원은행에 국고금 수납사무를 재위탁한 점포

망의 운영, 국고금 총괄계리 및 대정부 보고, 국고대리점 설치·폐지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

- 통할점(한국은행 국고증권실 및 지역본부) :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국고대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국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및 지역본부를 말하며, 담당 국고대리점에 대한 업무지도, 국고금의 회계처리 및 자금결제, 정정 등의 업무와 정부 회계공무원과 국고금, 국고예금에 대한 월계대사 업무를 수행
- 취급점(한국은행 및 국고대리점) : 납부자(채권자) 등과의 국고금 수납·지급업무를 취급하는 영업점을 말하며,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지역본부는 수납·지급업무를 모두 취급하고 국고대리점은 수납업무만 취급

3 수납 가능 국고금의 종류

- 국고대리점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을 납부처로 지정한 모든 국고금을 수납할 수 있으나 징수기관이 한국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특별히 지정한 국고금*은 국고대리점이 수납할 수 없음
 - 정부가 국고여유자금을 금융회사 등에 운용하였다가 회수하는 원리금 등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납부자는 납부서 등을 한국은행으로 Fax 송부하고 납부자금은 한은금융망 당좌차기(debit entry) 기능을 이용하여 납입함

가. 수입금

- 수입징수관의 고지 또는 납부자의 고지전 납부(자진납부) 방식에 의해 납부되는 세입금(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의 수입
 -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법에 의해 납부되는 국세 이외에 국유재산 등의 점용·사용·이용료, 각종 벌과금, 범칙금, 부담금, 보험료와 수수료, 고공입장료, 수출품과출검사수수료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관리하는 지방세와 공공기관의 수입인 전기요금, 전화요금과 같은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음

나. 지출반납금

- 지출관이 지급한 국고금 중 과다 지출 또는 교부 등의 사유로 기 지급된 국고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때 지출관의 고지에 의해 반환되는 국고금

다. 수입금출납공무원이 납부하는 국고금

- 수입징수관서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국고금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재납입하는 경우

표 1 **수납 가능 국고금과 지방세의 구분**

구 분		보 통 세	목 적 세
수납 가능 국 고 금	내국세, 관세 등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재평가세, 관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각종 벌과금, 범칙금, 부담금, 보험료, 연금, 국립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고공임장료, 수출품파출검사수수료, 국유재산 등에 대한 대부료·사용료, 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등	
	지출반납금	지출반납금	
지 방 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은 국고금이 아님

4 수납 절차 및 납부서류의 확인

가. 수납 절차

— 국고금의 수납(창구수납 기준)이란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회사 창구에 납부자가 방문하여 기재사항이 충족된 납부서류¹와 함께 금전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전산 입력하는 행위를 말함

▪ 국고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 관련 고지서 또는 납부서 등

○ 국고금 수납은 다음의 과정을 따름

- ① 납부서류 기재사항 확인 후 금전과 함께 수납
- ② 납부서류에 수납인 날인
- ③ 납부서 내용 전산입력²
- ④ 영수증서 등에 수납점포명, 수납일, 납부자, 수납금액 등을 전산인자하여 납부자에게 교부³
- ⑤ 증빙 정리 및 국고금 수납내역장을 출력하여 책임자가 검인한 후 보관
- ⑥ 영수필통지서 송부(필요시)
 - 다량의 국고금을 수납하는 경우 또는 납부자가 영수증서에 수납인의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서에 수납인을 날인하여 교부한 후 전산입력할 수 있음

— 창구수납 이외의 경우에는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거나 새로운 절차에 의해 처리할 수 있음


나. 납부서류 기재사항의 확인

1) 국고 수입금(또는 지출반납금)일 것

- 납부서 상에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
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경우
 - 납부서 상에 위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입징수관 계좌
번호(000001-0 ~ 999999-9 사이) 또는 지출관 계좌번호(D00001-0
~ Z99999-9 사이)가 기재된 경우
 - 반납고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출관의 지출반납금(국고수납)과
출납공무원의 반납금(국고예금 입금)을 구분하여 처리

서식 1 국고금 반납 고지서 서식

※ 지출관 계좌번호(예:E07891)가 기재된 경우 지출반납금이므로 국고로 수납,
출납공무원 은행/계좌번호(9~16자리) 기재 시엔 국고예금계좌에 입금

반납고지서 재종					우체국 요금후납
주 소		귀 하			
산 출 근 거		반납고지서경영수증(반납자용)			
1. 2. 3. 4.	납부번호				
	기 능	회 계 연 도	회 계	소 관	지출관 계좌번호 (출납공무원은행/계좌)
	반 납 자	성 명 호 (상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신고분	원
			가산금	원	
			총가산금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총가산금	원	
			납기후 금액	원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수납인 은행 우체국		

2) 금액 표기

- 금액 정정이 없어야 하며, 금액 정정이 있는 납부서류는 재발급받아 납부토록 안내
-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경우 원단위 금액을 버리고 수납함
- 아울러 금액이 한자로 쓰인 경우 “一”“二”“三”“十”의 숫자는 “壹” “貳”“參”“拾”으로 표시되고, 아라비아 숫자로 쓰인 경우에는 가로쓰기로만 표시될 것

3) 납부서 기재사항의 충족

- (수입징수관·지출관)관서명, (수입징수관·지출관)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또는 납부자번호), 금액 등 기재사항의 누락이 없을 것
 - 국세청소관 수입금의 자진납부일 경우 세목코드를 추가 확인
 - 일반회계 지출반납금일 경우 분야(기능) 코드도 추가 확인
- 또한 납부서류 상호간(납부서, 영수증서, 영수필통지서)의 기재사항이 일치할 것

4) 납부기한

-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만 수납이 가능함(만약 납기일이 한국은행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첫 영업일까지 수납 가능)
 - 특히 범칙금, 벌과금 과태료 성격의 국고금은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이외의 제재가 있을 수 있어 납부기한 경과분을 임의로 수납하는 경우 미납한 것으로 처리*됨에 유의
 - 미납에 따른 처분을 받고 기납부 국고금(납부기한 경과 납부분)을 해당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반환을 받아야 함

- 다만, 납부서류에 납부기한 후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거나 납부서류에 의해 납부기한 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관계 수입징수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후에도 수납할 수 있음
 - 수입징수관서에 납부기한 경과분 수납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입징수관서의 담당 공무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납부서 상에 병기

다. 수납한 국고금의 취소 가능 여부

-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은 수납한 증권이 부도처리("7. 증권에 의한 국고금 수납" 참조)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할 수 없음
 - '국고금의 수납 취소'란 취급점이 전산 입력한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취소, 재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력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납한 국고금을 납부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업무착오로 요건미비의 국고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입징수관서·통할점 등과 협의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정정처리하여야 함
- 수납한 국고금 중 납부자가 이중납부, 금액착오, 납부기한 여유 등의 이유로 국고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납부자가 수입징수관서와 협의(환급, 과오납반환의 요청)하여 처리하도록 납부자에게 안내(국고대리점은 수납한 국고금을 납부자에게 반환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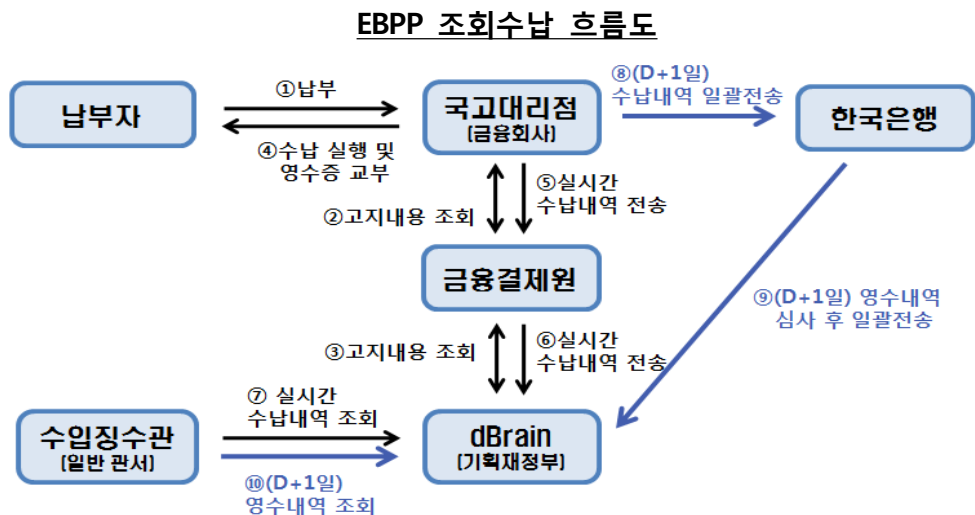
5 수납내역의 전산입력

- 국고금을 수납한 국고대리점 및 우체국의 텔러들은 원칙적으로 수납내역을 EBPP*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EBPP 조회수납 또는 입력수납)으로 전산 입력
- 전산장애 등으로 EBPP센터와의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단순입력 방식(수납내역을 EBPP센터로 실시간 전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산 입력
 - EBPP(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 전자고지&전자수납)센터는 기획재정부의 dBrain(우리나라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에 존재

가. 입력 방식

1) EBPP 조회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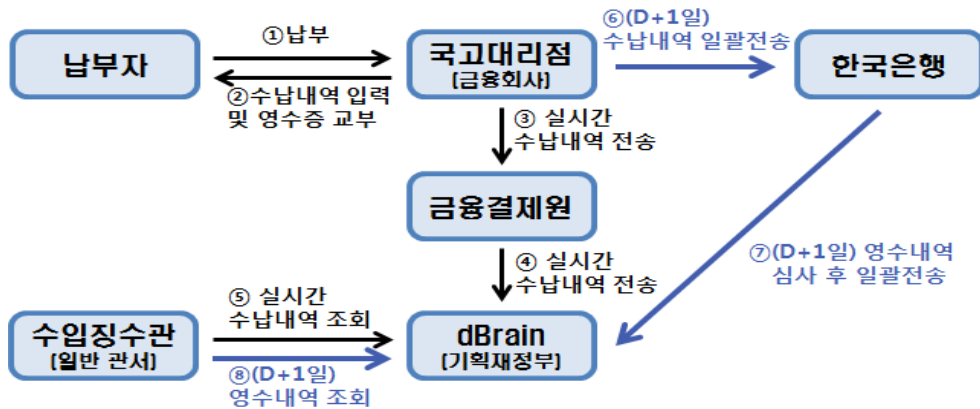
- 납부서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를 입력하여 EBPP센터가 제공하는 고지정보를 조회한 다음 납부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입력을 실행하는 방법(수납내역은 EBPP센터로 실시간 전송)



2) EBPP 입력수납

- EBPP센터의 고지정보를 조회하지 않고 납부서 상의 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세목코드, 납부금액 등의 수납내역을 모두 입력하는 방법 (수납내역은 EBPP센터로 실시간 전송)
 - 입력수납으로 입력하였더라도 전자납부번호 19자리가 입력된 경우에는 EBPP센터에서 해당 전자납부번호에 해당하는 고지내역을 검증하고, 고지내역이 있을 경우 고지내역과 수납내역의 일치 여부 및 기 수납 여부 등을 검증함(부적합 시 오류 처리)

EBPP 입력수납 흐름도



3) 단순 입력 수납<EBPP 이전 방식>

- 납부서 상의 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세목코드, 납부금액 등을 모두 입력하는 것은 EBPP 입력수납과 동일하나 입력내용을 EBPP센터에 실시간 전송하지 않는 방법(EBPP 입력수납과는 입력화면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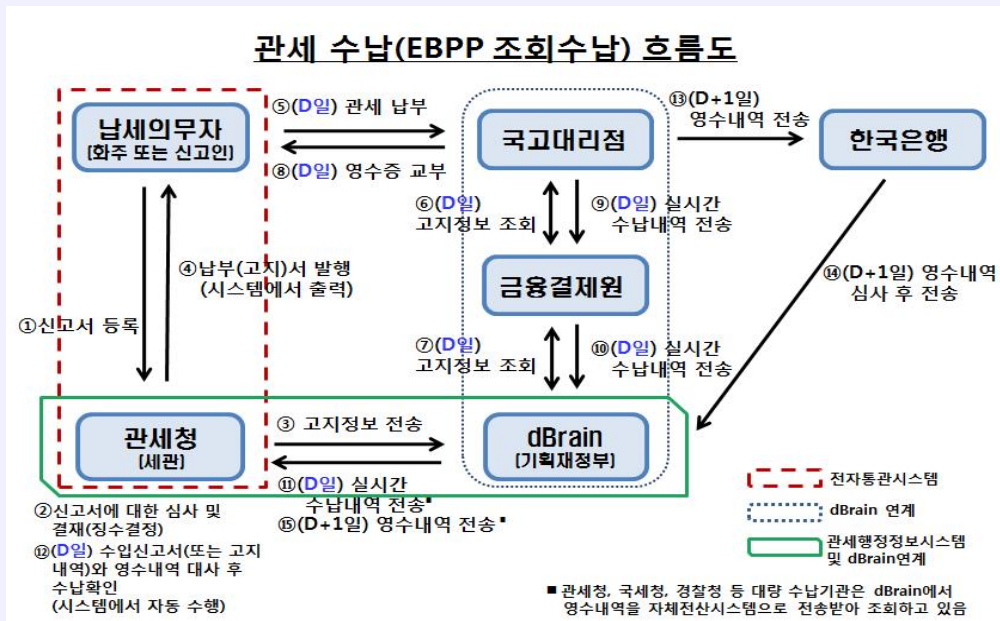
EBPP 이전의 단순입력수납 흐름도



- 단순 입력 수납은 EBPP센터 가동(2003.1.1.) 이전까지 사용하던 전산입력 방법으로 현재는 전산장애 등으로 EBPP센터와의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

참고 2 관세 수납 시 전송 절차 및 유의사항

- 수입화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입화물의 통관이 보류*되므로 관세를 수납한 수납기관은 관세 수납내역은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전송하여야 함
 - 관세가 수표로 납부된 경우에는 동 수표의 교환결제 시까지 통관이 보류됨
 - 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에서 발급된 관세 납부서는 전자납부번호(19자리)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EBPP 조회수납으로 입력
 - 수납기관의 전산입력 오류분은 관세청과 사전협의하여 고지정보 수정 등을 통해 정정(임의수정 불가)



- 관세 입력내용의 송수신은 수납기관의 입력에서 관세청의 정상여부 응답까지 즉시 처리되지 않고, 입력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응답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유의

나. 입력 항목별 유의사항

1) 금 액

- 납부서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떼어 버리고 입력함(원단위 단수까지 입력하여 한국은행 앞으로 자료를 전송한 경우 오류반송 처리되므로 주의)
- 납부서의 세목 중 마이너스(-)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세목별로 입력하지 말고 합계 금액만 입력
 - 자체 전산시스템에는 세목별 마이너스(-) 금액의 입력을 허용하되 한국은행 앞 수납내역 일괄전송파일(TRR0A1) 전송 시에는 합계 금액만을 본세로 생성 전송하는 것은 가능[▪]
 - EBPP센터로부터 수신한 수납내역에 마이너스(-)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표 2

1건의 납부서에 주세(본세)와 교육세(부가국세)가 함께 표기된 경우의 처리 예시

	납부서 기재 금액	전산 입력 금액
주 세 (본 세)	56,7 <u>89</u>	56,7 <u>80</u>
교육세 (부가국세)	12,3 <u>45</u>	12,3 <u>40</u>
합 계	69,1 <u>34</u>	69,1 <u>20</u>

⇒ 본세 및 부가국세 금액 각각에 대하여 10원 미만을 떼어 버리고 입력

2) 계좌번호

- 수입금은 수입징수관 계좌번호(숫자 6자리)를 입력하되, 소계정(숫자 1자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추가로 입력
 - 금융회사별로 자체 전산시스템의 계좌번호란이 「000000-0」체계로 되어 있으면 계좌번호(6)-소계정(1)의 순으로 입력(소계정이 없으면 “0”을 입력)
- 지출반납금은 지출관 계좌번호(영문자 1자리 + 숫자 5자리)를 입력하되 소계정(숫자 1자리) 및 분야코드(숫자 3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분야코드 입력란이 별도로 없는 금융회사는 수납내역 입력항목 중 “세목코드(7자리)”란에 입력(분야코드 3자리 + 공란 4자리)

3) 납부번호

- 납부번호*는 납부 건별로 부여된 고유 값으로, 착오 입력하는 경우 해당 납부 건은 미납 처리되므로 주의를 요함
 - ☞ <참고> 소관별 납부번호 입력 시 유의사항
 - 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 고지서번호, 통고서번호 등)는 19자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19자리 납부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보험관리번호 등을 입력

4) 수납증권의 종류

- 현금 이외 타점권을 수납하는 경우 타점권(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의 종류를 입력

참고 3 소관별 납부번호 입력 시 유의사항

① 경찰청 소관

- 범칙금, 벌과금 및 과태료 등은 통고서번호 19자리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o 통고서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납으로 처리되므로 주의

② 노동부 소관

- 고지서상의 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해야 하나 고지기관의 사정으로 납부번호 19자리 대신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보험관리번호 등이 기재된 고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동 번호를 입력함

③ 국세청 소관

- 고지납부의 경우 : 납부자의 실명번호 일부가 인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자납부번호(19자리)를 입력하여야 함
- 신고납부의 경우 : 납부번호가 없거나 19자리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자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목코드*를 입력하여야 함
 - 국세청 소관 수입금을 입력수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목코드” (납부번호 중 7자리로 구성)를 추가로 입력해야 함

※ 국세청 소관 국고금의 납부번호 구성

i) 고지납인 경우 : 19자리

납부번호 (19자리)	분류기호 4자리	세무서 3자리	「 세 목 코 드 」			발행번호 5자리
			연도 월 (2+2)자리	결정구분 1자리	세 목 2자리	

ii) (자진)신고납의 경우 : 14자리

납부번호 (14자리)	분류기호 4자리	세무서 3자리	「 세 목 코 드 」			발행번호 “공란”
			연도 월 (2+2)자리	결정구분 1자리	세 목 2자리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이 납부하는 지방세분 농특세

- 금고은행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6자리(숫자)를 입력

6 국고금 수납 자금의 처리 및 결제

- 국고금 수납 자금은 수납내역 전산입력 시 '국고대리점계정'에 자동 입금처리(수납내역 입력과 수납 자금 입금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납 자금의 '국고대리점계정' 입금 거래를 별도 수행하여야 함)
 - 금융회사는 각 국고대리점의 수납내역을 다음 영업일 08:30까지 국고 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 본부에 전송
- 한국은행은 수납내역을 전송받은 다음 영업일(수납일 + 2영업일) 14:00에 수납 자금을 각 금융회사 결제모집 당좌예금에서 차기하여 회수
 - 결제모집은 지준예치금계정과 각 국고대리점의 국고대리점계정을 대체(본지점계정 경우) 결제

7 증권에 의한 국고금 수납

가. 증권에 의한 수납

1) 의미와 근거

- 국고금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증권으로 수납할 수 있으며, 수납 가능 증권 및 수납 절차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2) 수납 가능 증권의 종류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 금융회사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 국고대리점을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우편소액환증서·우편전신환증서·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 금융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납부자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3) 수납증권의 조건

- 어음교환이 가능하고, 증권금액이 납부할 금액 이내일 것
-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의 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고 수령일이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가까운 증권은 수령을 거절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자기앞수표의 경우 지급 정지 수표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 조건에 불구하고 수납하는 것이 일반적임

4) 수납 절차

- 증권뒷면에 납부자의 연락처와 기명날인을 받음
- 납부서류*의 표면여백에 “증권수령”(당좌수표를 수납한 경우에는 “당좌수표 수령”)이라 표기하고, 국고금의 일부를 증권으로 수령한 때에는 해당 증권금액도 함께 표시
 - 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증(납부자용) 및 영수필통지서(납부자가 제시하는 경우)
- 수납내역 입력 시 증권의 종류를 입력(특히 관세*의 경우 반드시 증권 종류를 입력)

- 수입화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관세 수납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통관을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관세가 수표로 납부된 경우에는 수납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수납된 수표의 교환결제가 확인될 때까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이나 압류해제 또는 수입면허 등이 보류될 수 있음

5) 수납증권 부도 시 처리 절차

- 국고대리점은 국고금으로 수납한 증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국고금의 수납을 취소¹하고, 동 사실을 「수입금수납취소통지서」(지급은행의 ‘부도어음신고서’ 첨부)로 해당 수입징수(지출)관 및 통할점에 통지(Fax 송신)
 - 국고대리점에서 수납한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국고금으로 수납한 증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국고금의 수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국고금의 수납을 취소²하여야 함
 - 국고대리점은 국고금 수납내역장(전산출력자료 포함) 및 납부(고지)서에 해당 취소금액과 취소일자를 기재한 후 책임자가 이를 검인
- 납부자에게 ‘수납취소’사실을 알리고 이미 교부한 영수증과 부도증권 수령증을 받고 부도증권을 반환
 - 국고금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영수증에 취소내용을 기재하여 반환하며, 납부자 앞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납취소 통지내용을 해당 점포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
- 국고금의 수납 취소는 국고대리점에서는 수행할 수 없고 한국은행 통할점에서만 가능하며, 통할점에서는 전산입력 및 담당책임자 결재 절차로 종결
 - 통할점에서는 접수한 「수입금수납취소통지서」에 따라 국고금 정정³ 처리
 - 취소대상 금액이 정정당일 해당 대리점(결제모점)의 수납분 보고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고액 만큼만 분할하여 정정(반환)하고 나머지는 다음 영업일 수납분 보고금액에서 추가 정정(반환)

나. 수납 증권 부도 시 처리

1) 국고금 수납 당일

- 수표 등 증권에 의한 국고금 수납(이때 국고금 수납은행은 곧 교환어음 제시은행이 됨)

2) 수납 후 1영업일 째

- 수납은행은 수납일 다음 영업일에 어음교환회부 후 지급은행으로부터 교환제시 증권(국고금 수납증권)에 대한 부도통지를 받으면 즉시 수납증권 부도 시 처리 절차를 취함
- 만일,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통할점 및 수입징수관 관할통할점과 연장시간을 사전 협의한 후 연장에 응하여야 함

수납 후 1영업일의 처리 과정

① 수납내역 보고 [수납은행 → 한국은행]	② 어음교환 결제 [교환어음 제시은행(수납은행) ↔ 교환어음 지급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일 다음날 전송(08:30까지) ○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일 결제할 대상금액 확정 (국고마감시각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은행 : 어음교환 회부 ○ 지급은행 : 수취어음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결제 건에 대하여는 제시은행 앞으로 부도어음 통지(어음교환일 영업종료시각까지)*

▪ 부도통보 시각은 참가은행 간 합의로 연장(통상 '부도 연장' 또는 '연장'이라 함)이 가능(「어음교환 업무규약 시행세칙」 제70조)

3) 수납 후 2영업일 째

- 한국은행은 국고금 수납 자금 결제(각 금융회사 결제모점 당좌예금 계좌에서 차기) 시 부도취소 분을 차감한 금액을 결제
- 수납일자 + 1영업일 국고마감 전에 부도취소를 완료하여야 금융회사에 불이익이 없으며 이를 지연할 경우 금융회사는 최소 1영업일 이상의 자금 손실이 발생

참고 4 **부도연장 통지 및 조치사항** (수납은행·어음지급은행·한국은행 통할점)

① A은행 부산지점(수납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수입징수관서)* 수입금을 당좌수표로 수납(지급은행 : B은행 부산지점)하였으나, 다음날(수납일+1일)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

- 수납점 관할과 수입징수관 관할 통할점이 다른 경우로 수입금 취소 처리를 수입징수관 관할 통할점에서 정정(취소) 처리하므로 반드시 수입징수관 관할 통할점과 사전 협의 필요

[A은행 부산지점(수납은행)의 조치 필요사항]

- 한국은행과 합의한 부도연장 시간까지만 부도통지를 연장하여 줄 수 있음을 B은행 부산지점(지급은행)에 통지하고, 한국은행 부산본부(수납점 관할 통할점)에 부도연장 신청사실을 통지하여 연장 가능시간을 확인받은 후, B은행 부산지점(지급은행)에 최종 부도연장 승인을 하여야 함

[통할점의 조치 필요사항]

-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수입징수관서 관할 통할점)과 협의하여 부도연장 가능시간을 정한 후, A은행 부산지점(수납은행)에 통보하며, 이후 두 통할점은 부도연장 내용을 공유하고 당일 부도처리(취소 정정)에 대비토록 함

② 수납은행이 한국은행 통할점과 부도통지 연장시간을 17:00로 합의하여 지급은행에 통보하였으나 연장시한에 임박하여 부도처리 결정이 난 경우,

[A은행 부산지점(수납은행)의 조치 필요사항]

- 즉시 한국은행 부산본부(수납점 관할 통할점)에 부도발생 사실을 유선 연락하고, 「수입금 수납 취소 통지서」(부도어음신고서 첨부)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부산본부 및 수입징수관서에 FAX 송부

[통할점의 조치 필요사항]

-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유선 연락을 받는 즉시,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수입징수관서 관할 통할점)에 부도취소 건의 발생 사실을 통지한 후, 국고마감 전까지 A은행 부산지점(수납은행)으로부터 「수입금 수납 취소 통지서」를 제출받아 이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송부하여 수입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

-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수입징수관서 관할 통할점)은 부도취소 내역을 입력하여 당일(08:30) 보고된 수납내역(부도증권에 의한 수납분)을 취소함으로써 다음날 결제대상 확정금액에서 제외
 - o 한국은행 마감 이후 부도 통지된 경우에는 수납증권의 부도(D+1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보고된 수납내역을 취소할 수 없어 부도증권 수납 자금은 반환 처리되지 못하고 정상결제일(부도 다음날 : 수납일+2영업일)에 결제(수납은행 당좌예금 인출)됨에 유의
 - ↳ 이 경우 결제처리된 자금(부도증권금액)의 반환은 해당은행 당좌예금계좌에 부도금액을 즉시 입금하여 반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할점의 정정(취소) 일자에 보고되는 해당 대리점 수납내역(또는 통할점 관할지역 내 해당은행 전체 국고대리점 수납내역)의 합계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반환됨(동 금액이 부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납내역의 합계액 만큼만 반환되고 다음 영업일로 이월)

※ 국고금 부도통지 지연시의 수납 및 부도취소 자금결제 예시

- <예시> 1. 7.3일, 증권에 의한 국고수납 300억원
 2. 7.4일, 현금에 의한 국고수납 300억원

7.3일
(수납일)

대리점: 증권에 의한 국고수납 300억원

7.4일
(수납일+1일)

- ① 통할점: 대리점의 7.3일 국고 수납내역 300억원 수신(08:30)
- ② 대리점: 현금에 의한 국고수납 100억원
- ③ 통할점: 마감(익일 자금결제액 확정 300억원)
- ④ 대리점: 수납증권 부도 처리
(수입징수관 관할 통할점 마감 후 부도)

7.5일
(수납일+2일)

- ① 통할점: 대리점의 7.4일 국고 수납내역 100억원 수신(08:30)
- ② 통할점: 대리점의 7.3일 수납분 자금결제 300억원
- ③ 통할점: 100억원 부도증권에 대한 수납취소 정정 100억원
- ④ 통할점: 익일 자금결제액 확정 0원(①의 100억원 - ②의 100억원*)
 - 정정당일 통할점 앞 보고금액이 부도금액보다 작은 경우 익일 자금결제액 만큼만 차감(반환)하고 나머지 금액(200억원)은 이월

☞ 거래의 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경우, 정정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며칠 또는 몇 개월에 걸쳐서 반환하게 되어 수납은행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

서식 2 수입금 수납 취소 통지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수입금 수납취소 통지서

한국은행
통할점장 앞
수입징수관

문서번호 :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은행 지점(부) ㉠

수입금으로 납입된 증권의 부도로 인하여 아래 수입금의 수납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내 용		
1. 수입징수관서 (계좌코드)	()		
2. 납부자 주소			
3. 납부자 성명		4. 납부자 번호	
5. 수납일자		6. 수납금액	
7. 수납취소 일자		8. 수납취소 금액	
9. 부도증권 내용 (증권 종류, 기번호, 발행인, 지급인 등)			

주 : 이 통지서에는 “부도어음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지방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부가국세)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으로부터 ‘지방세에 부가된 농특세’의 납부가 있는 경우, 수입징수관 계좌번호를 134921-4(농림부 소관)으로, 납부자번호는 해당 농특세를 납부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계좌번호(기획재정부 소관)로 입력하여 수납
- 납부자번호 입력 시 수입징수관의 계좌번호는 6자리이므로 이후의 13자리는 빈칸으로 두거나 ‘0’을 입력함

지방세에 부가된 농특세 수납 시 납부자번호 입력 예시

1	2	3	4	5	6															
1	2	3	4	5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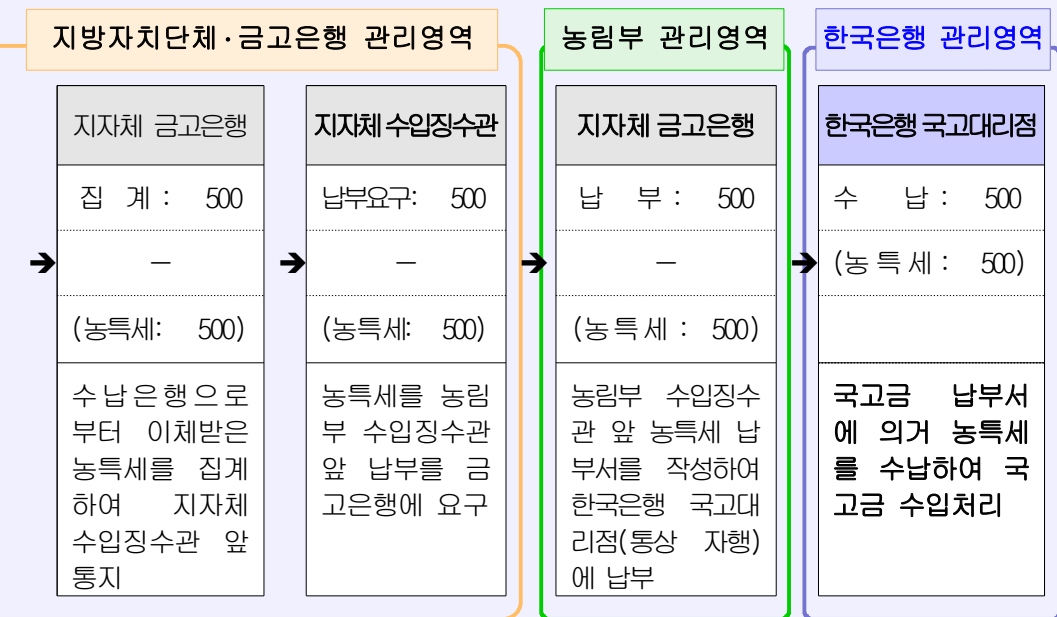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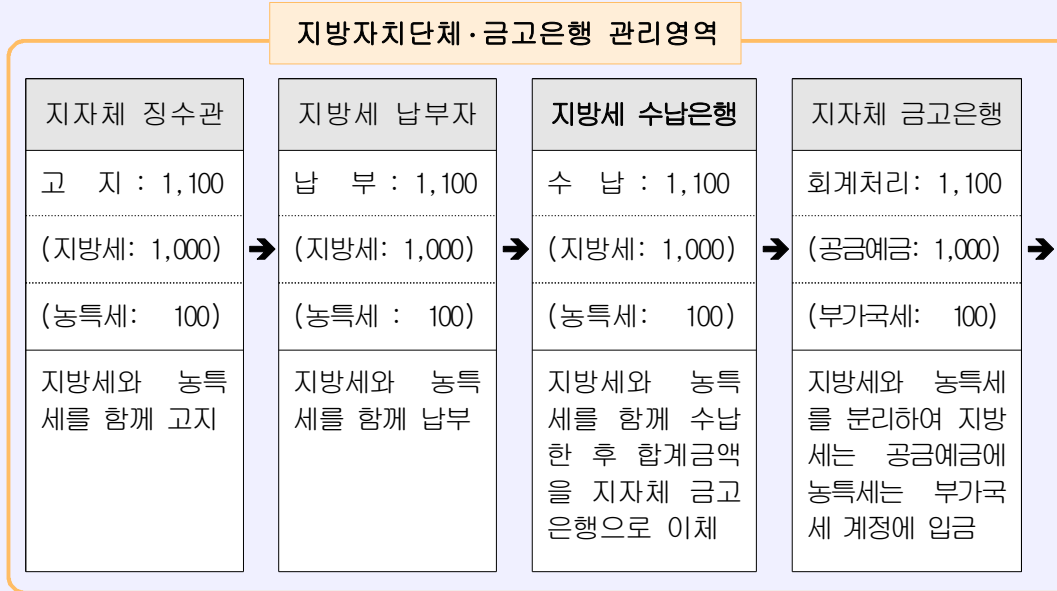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13자리 : 빈칸 또는 ‘0’ 입력

참고 5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의 부가국세 처리

- 지방세 수납은행은 취득세 등의 지방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병기된 형태의 고지서로 수납하는 경우, 지방세와 국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계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으로 이체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약정이 체결된 금융회사
-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은 지방세와 국세를 구분 집계하여 각각 공금예금과 부가국세 계정에 입금조치하고, 이중 농특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징수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농림부 소관의 국고금으로 납부 처리함
 - － 현재 모든 금고은행(지방자치단체 대행업무)이 국고수납대리점(한국은행 대리업무)을 겸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금융회사 영업점이 국고금 납부자(금고은행)와 국고금 수납기관(국고대리점)의 역할을 동시 수행
 - 납부금액의 계산, 납부서의 작성, 수납기관 앞 납부(납부서와 금전의 전달)는 납부자(지자체)의 대리인(금고은행)으로서 수행하는 것이고, 납부자로부터 납부서와 금전을 받아 이를 전산입력하는 것은 국고대리점으로서의 행위에 해당
 - 동일인이 납부업무와 수납업무를 병행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납부 및 수납의 책임소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함(납부행위는 금고은행으로서, 수납행위는 국고수납대리점으로서 책임)

참고 6 지방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의 고지 및 수납 예시

- 근거 : 「주세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수입처리지침」(기획재정부 지침)



II. 국고금의 정정

1 정정의 의미와 처리 주체

- 정정이란 사전적 의미에서와 같이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를 의미하며 국고업무에 있어서는 국고업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착오로 발생한 한국은행의 기록 오류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절차를 의미
 - 국고금 납부자,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의 착오에 의한 오류는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이 한국은행에 정정을 요청(청구정정)
 - 한국은행의 착오에 의한 오류는 자체 정정하고 국고대리점의 오류는 해당 대리점이 담당 통할점에 정정을 요청**(내부정정)
 - 국고업무 당사자 : 국고금 납부자(수입금출납공무원 포함), 수입징수관 및 지출관, 수납기관(한국은행 및 국고대리점, 우체국, 국고금납부대행기관)
 - 납부자와 달리 국고대리점의 업무착오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대리점이 한국은행에 직접 정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국고대리점은 한국은행의 대리인으로 국고업무를 취급하는 것이므로 대리인(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의 행위를 본인(한국은행)의 행위와 동일시 하는 원칙(민법의 대리인제도)에 따르는 것임
다만, 국고대리점이 국고 수납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고수납대리점계약서 등에 의거 손실을 배상

가. 국고대리점의 신청에 의한 정정

- 국고대리점이 정상적으로 수납한 국고금의 전산입력을 잘못하였거나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수납일이 경과한 후 발견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함

- 착오 사실이 수납 당일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체 전산시스템에 수정 (추가) 입력
- 국고업무 당사자 중 납부자의 과실에 의한 착오 납부*의 경우에는 납부자나 국고대리점이 통할점에 정정 신청할 수 없음
- 납부자가 직접 해당 수입징수관서에 연락하여 납부내역의 정정을 요청하거나 환급받도록 안내
 - 납부서류 작성 오류,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등 전자매체 오 조작에 따른 이중납부 또는 다른 납부자의 국고금 납부 등

나. 정정업무 처리 주체

- 국고금의 정정은 한국은행의 국고금 회계처리 등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국고대리점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담당 통할점*에 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함
 - '<별첨 1> 한국은행의 국고 통할점 및 담당지역' 참조

참고 7 국고대리점 착오에 대한 정정처리의 의의

- 국고금은 납부기한이 경과(미납처리)되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거나 면허취소와 같은 제재가 납부자에게 주어지는데, 동 제재는 국고금 납부의무를 해태한 납부자에 대한 제재이지 국고금 수납기관(직원)의 업무수행 착오에 부과하는 제재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납부자에 대한 제재가 수납기관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납과정의 착오를 정상으로 환원하는 절차(정정)를 둠
- 그러나 입력누락의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누락한 원인이 납부자에게 있지 않고 수납 직원의 수납업무 취급과정 중 발생한 과실임을 국고대리점이 입증해야 정정 가능

2 국고대리점의 정정 신청과 통할점의 처리

가. 국고대리점의 정정 신청

- 국고대리점은 국고금 수납내역의 오류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국고금 수납내역 정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담당 통할점에 정정을 신청
- 정정 신청의 사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계좌번호의 착오 입력
 - 납부번호의 착오 입력
 - 금액의 착오 입력(과소입력 또는 과다입력)
 - 입력누락(정상 수납한 국고금의 수납내역을 전산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수납 자금은 원칙적으로 국고대리점계정, 가수금계정, 별단예금계정 등 은행계정에 입금되어 있어야 함)
 - 이중입력(동일한 수납내역을 두 번 이상 중복하여 입력)
 - 국고금을 지방세(공과금)로 착오 입력
 - 지방세(공과금)를 국고금으로 착오 입력
 - 여러 건의 국고금을 한 건으로 착오 입력
 - 복합 오류의 발생(계좌번호, 납부번호, 금액 등 입력요소 중 2가지 이상의 오류가 겹쳐서 발생한 경우)

나. 통할점의 정정 처리

1) 정정의 심사

- 한국은행 통할점은 정정여부를 심사한 후 수납증빙*과 전산입력내역을 비교(입력누락 제외)하여 수납증빙 내용대로 정정함
 - 납부서류는 수납시점에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것만 유효(수납 이후 교체한 납부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 다만, 금액정정 중 과소입력으로 차이나는 금액이 거액인 경우에는 입력누락에 준하여 심사

참고 8 통할점 정정 심사의 기준

- ① [정당 납부행위의 완료] 납부자가 정당하게 납부하였는지 여부
 -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정당한 납부서류와 함께 국고금을 창구에 납부하였는지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하던 중 납부자의 착오로 두 번 납부하는 등의 실수에 의한 정정요청은 아닌지(전산시스템 오류 등은 정정 대상임)
- ② [수납행위시 착오에 의한 오류]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납부자는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국고대리점 담당직원의 착오로 계좌번호, 납부자번호, 금액, 입력누락(가수금 등에 착오 입금) 등의 오류가 발생되었는지
- ③ [전산시스템의 오류] 전산장애 등에 의해 발생한 오류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히 관세 수납 시, 납부자의 오류 없이 EBPP시스템의 오작동만으로 발생한 오류인지
 - 납부자가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는 중 해당 은행 시스템의 오류로 두 번 납부된 경우인지 등
 - 전산상 오류인 경우, 해당 전산부서의 전산 로그파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음

2) 입력누락에 대한 심사기준

가) 입력누락의 의미

- 입력누락이란 납부자가 정당하게 납부한 국고금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의 수납 담당직원이 업무착오로 수납 당일 전산입력을 하지 못한 것을 의미
 - 입력누락에는 수납받은 국고금을 전혀 입력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국고금을 지방세, 공과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를 포함

나) 입력누락 심사시 중점 심사사항

- 납부자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인지(정정대상이 되지 않음) 수납점이 국고금을 정상적으로 수납하고도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인지(정정대상)에 대해 심사 <참고> 입력누락 정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례
- 국고금 수납은 일반적인 은행거래와 달리 기산일 소급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납 자금 입금 증빙 심사 시 기산일 거래 여부 심사
 - 가수금계정 원장 사본 등은 기산일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일자과 시간이 인자된 입금전표 원본 등으로 확인
- 입력누락 발생 경위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도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수납한 국고금의 유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사
 - 거래의 출납과여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규명하지 않고 업무를 종료하는 금융회사는 거의 없으므로 거래의 입력누락은 가수금 등에 자금이 정상 입금된 증거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추가 확인
 - 특별한 사유란 출납과여금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국고금 입력 종료 시간(24:00 등)이 도래하여 출납과여금을 부득이 가수금에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등을 들 수 있겠음

- 수납한 국고금을 일정기간(납부기한까지 등) 동안 별단예금과 같이 금융회사 관리하에 있는 계정에 입금하여 둔 경우에는 수납사실을 인정하여 정정할 수는 있으나 횡령이나 유용 여부에 대해서* 심사
 - 수납 자금의 유용 또는 횡령에 준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사고로 처리

참고 9 입력누락 정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례

1. 수납행위 이전단계(납부대행 행위)에서의 착오

- 국고대리점이 수납 자금, 출금서류 및 납부서류를 납부자로부터 건네받고 납부자와 합의(동의) 하에 납기일에 납부자 명의의 예금(또는 은행명의 통장)에서 해당 예금을 출금하여 납부 및 수납하기로 하였으나 대리점이 납기일에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이는 ‘금융회사와 납부자 간에 임의로 체결한 약정에 의한 납부대행’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인 수납행위가 납기일 이내에 완성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정정(입력누락)대상이 될 수 없음(국고금 수납행위 이전 단계의 착오에 해당)
 - 납부대행을 수납행위로 인정할 경우 수입징수기관이 정한 납부기한은 무의미해지는 결과 초래하기 때문이며, 현재 국고금 납부대행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고금납부대행기관(신용카드에 의한 국고금 수납기관)이 유일
(국고금 납부대행기관을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인정하고 납부대행행위를 수납행위로 인정하나 납부대행 의뢰 즉시 수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납부대행과는 차이)

2. 납부행위의 미완성

- 금융회사가 국고금 납부자로서 납부해야 할 국고금(익월 10일 국세로 납부할 이자소득, 근로소득 원천세 등)을 가수금 등에 보유하고 있었으나 납기일에 납부 및 수납처리하지 못한 경우
 - 이는 납부자의 지위에 있는 금융회사가 납부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납행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없어 정정(입력누락)대상이 아님

3) 정정금액의 결제 및 정리

- 수납 금액의 정정이 수반되는 경우 정정금액은 통할점의 정정당일에 보고된 해당 국고대리점의 수납금액에 가감되어 다음 영업일에 결제
 - 따라서 수납액을 감소시키는 정정(과다입력, 이중입력 등)의 경우, 정정당일 현재 한국은행에 보고된 대리점담당 결제모점 총 수납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⁴
 - 감액되는 정정자금의 반환은 통할점 정정일에 해당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정일에 한국은행 앞 보고된 국고금 수납액을 감소시켜 결제자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반환되기 때문임(정정금액이 수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납금액이 정정금액에 달할 때 까지 정정금액을 분할하여 정정)
- 정정 신청 국고대리점은 한국은행의 정정자금 결제일(또는 정정신청일)에 정정 신청자금을 정당 계정으로 입출금 정리
 - 정리방법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한국은행 결제금액 총액을 국고대리점 계정에서 출금하는 경우와 정상 수납액만을 국고대리점 계정에서 출금하고 정정분은 별도 계정처리토록 하는 등)

서식 3 국고금 수납내역 정정 신청서

<별지 제42호 서식>

국고금 수납내역 정정신청서

문서번호 :

수 신 : 한국은행 통할점(국고증권실·지역본부)

당점의 국고금 수납내역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 정정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금 수납내역 정정 신청내용

구 분	정 정 전	정 정 후
관 서 명		
계 좌 번 호		
납부자번호		
수 납 금 액	₩	₩
수 납 일 자		
수 납 점	_____은행 _____지점(지로코드 : _____)	
비 고		

- 주) 1. 비고칸에는 입력착오 사유(이중입력, 입력누락 또는 입력오류 등)를 기재할 것
 2. 굵은 선 안은 전산입력 사항이므로 굵고 크게 기재할 것

- 붙 임 : 1. 수납일자의 국고금 수납내역장 사본 1부.
 2. 해당 오류처리 건에 대한 납부서 사본 또는 정당납부서로 볼 수 있는 서류 1부.
 3. 정정신청 사유발생 경위를 기재한 취급점장 확인서(담당자 등 관련자 직·성명을 포함하고 취급점장 직·사인(서명)을 날인) 1부.
 4. 국고금의 실제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고대리점계정 또는 가수금계정 입금전표 사본 등 그 밖의 입증자료.
 (단, 제3호 및 제4호 서류는 이미 보고한 금액 또는 누락금액이 실제 수납액 보다 10만원 이상 부족한 경우에만 제출) 끝.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은행 지점 (인)

담 당 자	직·성명	
	전화번호	

* 서식 다운로드 : 한국은행 홈페이지-금융시스템-국고증권제도-국고업무자료-국고금정정신청서(공지)

Ⅲ. 국고금의 사고 처리

1 의 의

- 국고대리점 또는 그 직원 등이 수납한 국고금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횡령·유용한 경우를 국고금 사고라고 함

2 사고의 보고 및 처리

가. 사고 보고

- 국고대리점은 국고금의 횡령이나 유용 등 사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고금 사고 보고서」에 의하여 담당 통할점과 소속 금융회사의 국고업무 주관부서에 보고

나. 사고의 처리

- 횡령, 유용 국고금 중 발견시점까지 수납내역이 전산입력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입력누락으로 정정
- 횡령, 유용 국고금에 대해 정상 결제일(실제수납일 + 2영업일)로부터 실제 결제일(전산입력일 + 2영업일 또는 정정일 + 1영업일)까지의 결제지연적수에 대한 집중지연이자를 해당 국고대리점에 부과
 - 집중지연이자내역 통지 및 이의 접수(통할점)
 - 본부 앞 집중지연이자내역 통지(통할점)

- 기획재정부 앞 집중지연이자 부과 요청(본부)
- 집중지연이자의 수입금 납부 고지(기획재정부)
- 조기회수 실시 또는 국고대리점 폐지 결정(본부)
 - 사고발생 국고대리점을 폐지하거나 해당 국고대리점의 국고금 수납액에 대해 1~6개월간 조기회수 실시(조기회수 실시는 통할점에서 담당)
 - 1차사고 발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고가 재발하거나 1차사고 발견 시라도 계속하여 국고업무를 취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대리점 폐지
- 금융회사 대표 앞 서면 주의환기(본부)
- 사고가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국고대리점 신설 제한(본부)

<별지 제15호 서식>

국고금 사고 보고서

1. 사고 발생 국고대리점명 :
2. 사고내용 :
 - 가. 사고금액
 - 나. 사고자 인적사항
 - 다. 사고유형(횡령 또는 유용 등)
 - 라. 사고발생일 또는 사고기간
 - 마. 구체적 사고내용(필요시 별지 사용)
4. 발견경위(늦게 발견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사용)
5. 사고에 대해 이미 조치한 내용 또는 조치계획
6. 그 밖의 참고사항

주) 국고금 사고(횡령 또는 유용 등)의 경우 발견 즉시 담당 통할점 또는 본부에 유선연락 후 서면보고

IV. 국고금 수납 자금의 결제

1 의 의

- 국고금 수납 자금의 결제란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을 담당 통할점이 금융회사가 각 통할점에 예치한 당좌예금에서 출금(차기)하는 것을 말하며 정상결제, 조기결제, 조기회수로 구분
 - 정상결제 :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자금을 수납 2영업일째에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것을 의미
 - 금융회사는 매일의 국고금 수납내역을 다음 영업일 08:30까지 한국은행으로 전송하고 한국은행은 금융회사로부터 전송받은 국고금 수납내역상 수납금액에 당일 중 국고대리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한 정정금액을 가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다음 영업일 금융회사 당좌예금에서 차기하여 결제
 - 조기회수 : 국고금 사고 등에 따른 국고대리점 제재의 일환으로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자금을 정상결제일보다 1영업일 앞당겨 결제하는 것을 의미
 - 조기결제 : 제재이외의 사유로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자금을 정상결제일보다 1영업일 앞당겨 결제하는 것을 의미

참고 10 조기결제와 조기회수의 비교

- 조기결제와 조기회수는 모두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에 대하여 통할점이 정상 결제기일(수납 후 2영업일) 보다 1영업일 먼저(수납 후 1영업일) 결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
 - 의미상 조기결제는 결제지연적수 만큼의 대리점 자금수혜 부분을 상쇄하는 조치
 - 조기회수는 국고금 사고 등에 따른 대리점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대부분 사유발생 즉시 실행되며, 일정금액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매일의 수납 자금(지출반납금 포함) 전액을 1일 조기 회수

2 조기결제

가. 조기결제 대상

- 국고금 수납액이 결제기일을 경과하여 결제*된 때. 다만, 건당 결제 지연된 국고금의 적수가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한 국고금 수납내역에 오류가 있어 반송되거나 입력누락, 과소입력 등의 사유로 발생
- 한국은행 본부의 요청이 있을 때
 - 거액 또는 여러 건의 국고금 수납내역이 정상 보고일보다 지연 전송되어 익월 조기결제 실시 시 번잡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주로 실시*
 - 거액의 지연금액을 익월에 조기결제하는 경우에는 수납금액 부족 발생으로 조기결제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건 지연은 행정처리가 복잡해 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실시 방법

- 지연적수가 2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는 매월 10일까지 통할점이 조기결제 대상금액*과 조기결제 실시일을 해당 국고대리점(동 국고대리점의 결제모점 포함) 앞으로 통보
- 해당 국고대리점 등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정된 일자에 해당 국고대리점 국고금 수납내역 보고금액 중 조기결제 대상금액을 당일 결제** (한국은행에 예치한 금융회사 당좌예금에서 차기)
 - $\text{조기결제대상금액} = \text{결제지연적수} = \text{결제지연금액} \times \text{지연일수}$
 - 해당 국고대리점의 수납내역 보고금액이 조기결제 대상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국고대리점이 소속된 결제모점 관할 전체 수납내역 보고금액에서 결제하고, 동 금액도 조기결제 대상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영업일로 이월하여 조기결제하는 방식으로 수행

- 본부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시마다 본부가 통할점 또는 국고업무 주관부서 앞으로 조기결제 일자와 금액을 통보한 후 조기결제 실시일자의 수납내역 보고분을 당일 결제
 - 본부가 특정 통할점에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통할점이 관련 대리점과 결제모점에 추가 통보
 - 매월 실시하는 조기결제(지연적수 20만원 이상 건에 대하여 매월 10일에 실시하는 조기결제)와 다른 점은 당일 금융회사로부터 수신한 수납내역에 포함된 건 등에 대해 당일 결제를 한다는 점임

참고 11 **정상결제 및 조기결제의 진행과정 예시**

- 2.6일자 대리점 수납분(₩1,000,000)의 한국은행 자금결제
 - * 2.5일 및 2.7일자 대리점 수납분은 없다고 가정

○ 정상결제

	일 자	시 각	금 액(원)
대리점 수납	2013.2.6	-	1,000,000
수납내역 전송(은행→한국은행)	2.7	08:30	-
· 한국은행, 익일결제액 확정	2.7	16:00	1,000,000
한국은행, 국고금 정상결제	2.8	14:00	1,000,000

○ 조기결제 (2.7일에 ₩300,000을 조기결제하는 경우)

	일 자	시 각	금 액(원)
대리점 수납	2013.2.6	-	1,000,000
수납내역 전송(은행→한국은행)	2.7	08:30	-
한국은행, 국고금 조기결제 실행	2.7	16:00 이전	300,000
· 한국은행, 익일결제액 확정	2.7	16:00	700,000
한국은행, 국고금 정상결제	2.8	14:00	700,000

3 조기회수

가. 조기회수 대상

- 국고금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 국고금 사고가 발생한 국고대리점에 대하여 본부가 해당 대리점의 국고금 수납액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기회수하는 제재를 부과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고금 취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데 따른 제재
 - 통할점이 해당 대리점의 국고금 수납액을 1개월간 조기회수하는 제재를 부과한 경우

나. 실시방법

- 통할점은 매일 금융회사가 전송한 국고금 수납내역 중 조기회수 대상 금융회사가 수납한 국고금에 대하여는 전송 당일 결제
 - 제재대상 대리점이 국고금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동 정정금액도 조기회수 대상에 포함

V.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1 의 의

-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이란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금액 중 미결제액과 국고대리점계정의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함
 - 수납한 국고금이 정상적으로 한국은행에 보고되어 결제되고 있는지, 국고대리점계정을 이용한 횡령·유용 등의 사고는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

2 국고대리점의 자체 점검

- 각 국고대리점은 매일의 B/S상 국고대리점계정 잔액이 “**당일 수납분** + **전일 수납분** - **당일 조기결제(회수)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조치

3 통할점의 요청에 의한 점검

- 한국은행 통할점은 매분기 1회 특정 일자를 지정(잔액 대조·확인 기준일)한 후 동일자의 소속 국고대리점별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결제모점에 요청
- 결제모점은 기준일자 소속 국고대리점의 자체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결과를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결과보고서(결제모점용)」에 따라 한국은행 통할점에 보고
 - 자체 대사결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경위 및 조치결과를 보고서에 기재

서식 5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결과 보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결과 보고서(결제모점용)
(20 . .)

한국은행 ____통할점장 앞

20 년 월 일 현재 국고대리점계정 잔액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단위 : 원)

잔액확인 실시 기준일 전일 수납액(A)	
잔액확인 실시 기준일 당일 수납액(B)	
정당 국고대리점계정 잔액[미결제 수납액] (C=A+B)	
B/S상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D)	
차 액 (D-C)	

2. 차액발생 경위 및 정리내용

(1) 차액발생 경위

- 차액발생 원인 거래(거래일자, 종류, 금액) 및 오류내용 등

(2) 정리내용

- 정리일자, 정정처리 내용(통할점 앞 정정신청 대상인 경우) 등

작성자 : 소속

직·성명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 .

____은행 ____지점(부)장 (인)

VI. 수납증빙의 처리 및 영수증명

1 수납증빙 등의 처리

- 국고대리점은 국고금 수납증빙을 국고금 수납내역장(전산 출력자료)에 첨부하여 합철 보관함(국고금 수납내역장 전산 출력자료는 출력 다음 달까지만 보관하고 수납증빙과 분리하여 폐기할 수 있음)
 - 수입금 납부서류는 수납일자별로 국고금 수납내역장 순서에 따라 분류 제본하여 보관하되 필요시에는 월별, 연도별 등 적절한 단위로 제본하여 보관할 수 있음
- 국고대리점은 국고업무 취급과 관련된 장부, 증빙, 증거서류 및 증명서류 등은 아래 기준 동안 자체 문서보존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보존

장부 등의 종류 및 보존기간

구 분	내 역	보존기간
장 부	국고금 수납내역장(전산원장 보존으로 같음할 수 있음)	5년
증 빙	수입금의 납부서류 및 국고금 반납고지서 등 수납증빙	2년
증거서류	증빙을 제외한 국고 관련 청구서.의뢰서.통지서 등 증거서류	1년
증명서류	그 밖의 증명서의 비치본	1년

- 국고대리점은 납부서류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서 사본 또는 영수필통지서를 수납일 다음 날 오전 중에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송부
 - 납부서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부”라고 표시된 경우
 - 동일 납부서에 지방세와 국고금이 같이 기재되어 납부된 경우
 - 전산입력 내용만으로는 납부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납부번호 19자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2 수입금에 대한 영수증명

- 국고대리점은 납부자나 수입징수(지출)관서로부터 국고금 납부사실에 관한 증명의 청구를 받으면 자체 보관하고 있는 납부서 등을 근거로 수기(手記)작성 또는 전산출력 등의 방법으로 관련 증명서를 발행
 - 청구자로부터 「수입금 영수증명 청구서」, 「교통범칙금 수납내역 확인의뢰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증명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청구자에 교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
 - 청구자가 증명을 요구하는 납부내역(성명, 납부번호, 납부일자, 납부금액, 수입징수관명 등)이 수납정보와 일치하는지를 「국고금 수납내역장」 및 납부서와 대조·확인

서식 6 수입금 영수증명 청구서

<별지 제51호 서식>

수입금 영수증명 청구서

년 월 일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 ○ 은 행
 _____지점장 앞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아래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도	
회 계 명	
납부자주소성명	
수입징수관서명	
세 목	
금 액	
납 부 일 자	
수 납 접 명	
위와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 ○ 은 행 _____지점장 (인)	

주 : 청구자로부터 본 청구서 2통을 제출받아 증명한 후 1통은 청구자에 교부하고 1통은 발행점에서 보관할 것

(여 백)

부록 및 별첨

(여 백)

<부록> 금융회사의 국고예금업무

1 의 의

- 금융회사 및 우체국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탁받은 예금을 국고예금이라 함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출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국고예금 계좌를 개설
 -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수납한 선사용자금*의 출납을 위하여 우체국 등에 국고예금 계좌를 개설
 - 관서운영경비란 소액(500만원 이하)의 관서운영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비정규직보수 등을 말하며 지출관의 지출이 완료된 국고금
 - 선사용자금이란 수입금을 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출하여 국고에 대체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금(우체국)

☞ 지출관의 자금교부(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 → 국고예금계좌 입금
→ 경비 지출(정부구매카드 등 이용)

2 거래대상 금융회사

- 「은행법」상 은행* 및 체신관서(우체국)
 - 산업은행은 포함되나 수출입은행은 제외(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제외)

3 거래방법

가. 계좌의 개설, 변경 및 폐지

1) 계좌의 개설

— 관서운영경비 및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함)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통장)의 개설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및 우체국(이하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일반적인 예금거래 절차를 준용하여 개설

- 국고예금 계좌개설 신청서(각 금융회사 서식)
- 예금주 : 관서명(출납공무원의 성명등록 불필요)
- 실명번호 : 고유번호(부가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실명번호 확인 : 고유번호증 사본
- 인감 : 출납공무원 직인(필요한 경우 사인 추가 날인)
- 비밀번호 : 출납공무원 등이 임의로 부여
- 계좌번호 : 16자리 이내에서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
- 통장 필수 기록사항 : 성명(관서명), 계좌번호, 계좌관리점포(점포명, 지로코드, 전화번호), 신규개설일, 통장발행일
- 통장 전면 또는 인자란 등 적절한 위치에 '국고예금' 통장임과 한국은행 앞 계좌신설 통보가 필요함을 안내하는 문구" 인쇄
 - 예시: "이 통장은 국고예금계좌이며, 각 관서는 통장개설내용(신규, 변경, 폐지)을 정해진 양식에 의거 한국은행 앞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계좌의 정보 변경

- 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국고예금 계좌정보의 변경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취급기관의 일반적인 예금거래절차에 따라 처리
 - 거래인감의 변경은 출납공무원 등 교체 또는 인장 마모의 경우에만 변경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관서의 공문(신·구 직인 또는 사인(私印), 신·구 비밀번호 변경임을 명시) 수령 후 처리
 - 출납공무원 등 교체에 따른 비밀번호 변경 또는 비밀번호 망실의 경우 금융회사 자체규정에 의거 비밀번호 교체
 - 관서명, 주소 등의 변경 시에는 해당 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 통할 점에도 통보하도록 안내
- 다만, 국고예금 계좌의 계좌번호 변경 및 점포 간 이관은 불가
 - 계좌번호 변경 사유 또는 점포 간 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폐지 후 신설

참고 12 국고예금 계좌 개설관련 출납공무원 유의사항

- 국고예금계좌는 원칙적으로 출납공무원별로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 회계·계정 및 분야(기능)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 계좌 개설 가능(별개의 출납공무원인 것으로 봄)
 - 거래점 변경·계좌번호 변경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복수계좌 개설 가능
- 출납공무원은 계좌개설 사실을 국고예금계좌 신설 통보서에 의해 담당 한국은행 통할점에 통보
- 국고예금 계좌개설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즉시 국고예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고 계좌를 해지한 다음 국고예금계좌 착오 개설 및 폐지 확인서를 담당 한국은행 통할점에 송부

<별지 제54호 서식>

국고예금계좌 (신설, 변경, 폐지) 통보서
(년 월 일)

한국은행

통할점장 앞

제출자

인

관 서 명			
우편번호 및 주소	□□□□ - □□□□		
전화번호		FAX번호	
회계·계정		소계정	
기 능		소 관	
회계직위			
계좌개설점	은행	지점 (지로코드 :)	
계좌번호			
개설일자		폐지일자	
비 고			
<수입정수관계좌>			
계좌번호			
계 정		소계정	
<p>< 작성요령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산입력 항목이므로 정확히 기재할 것 2. 계좌개설점에는 금융회사명, 점포명 및 금융결제원 점별 코드를 기재할 것 3. 계좌번호, 계좌개설점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좌번호, 계좌개설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좌 폐지 및 신설 절차를 취할 것 4. 비고칸에는 변경 통보 시 변경되는 내용(예: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 5. 계좌신설통보서만 제출하는 경우 최초 계좌 개설로 처리되니 계좌번호 변경, 거래 금융회사 점포 변경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계좌의 신설 통보와 구 계좌의 폐지 통보를 함께 송부할 것 6. 수입정수관계좌는 국고예금계좌의 이자를 세입납부할 국고세입계좌를 기재 			

- 첨부 : 1.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통지서 사본(관직 지정 후 최초 통보 시) 1부
2. 국고예금 통장 사본(계좌 신설 시) 1부

위의 사실을 인증함

년 월 일

계	책임자

(관서의 장)

인

<별지 제55호 서식>

국고예금계좌 착오 개설 및 폐지 확인서

(년 월 일)

한국은행

통할점장 앞

제출자

인

관 서 명			
우편번호 및 주소	□□□□ - □□□□		
전화번호		FAX번호	
계좌번호			
계좌개설점	은행	지점 (지로코드 :)	
개설일자		폐지일자	
자금종류			
거래금액	거래월	수입액	지급액
	월분		
	월분		
	월분		
	월분		
	계		
< 작성요령 >			
1. 전산입력 항목이므로 정확히 기재할 것			
2. 계좌개설점에는 금융회사명, 점포명 및 금융결제원 점별 코드를 기재할 것			
3. 자금종류에는 보관금, 급여이체자금 등 입금된 자금의 재원을 기재할 것			
4. 거래금액에는 월별 수입액, 지급액을 합산하여 기재할 것			

위의 사실을 인증함

년 월 일

계	책임자

(관서의 장)

인

3) 계좌의 폐지 등

- 출납공무원으로부터 계좌 해지 신청을 받는 경우 계좌 잔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 처리하되 전산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부리적수가 있는 경우 : 이자 계산 기일까지 적수 및 이자를 한국은행에 보고
 - 부리적수가 없는 경우 : 한국은행에 이후 보고 생략
- 국고예금 계좌는 거래가 장기간 발생하지 않더라도 휴면계좌로 분류하지 않음

나. 계좌의 입·출금

1) 입 금

- 국고예금 계좌에 대한 입금은 통장에 의한 창구입금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을 통한 계좌입금, 무통장입금, 온라인입금, 타행환입금,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을 통한 입금 등으로 가능
 - 지출관이 수행하는 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로의 이체(자금교부)는 '실시간 국고금 전자이체시스템'을 이용
- 입금 가능시간은 원칙적으로 각 금융회사 영업시간 이내
 - 한국은행 앞 입출금 거래내역 전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 선택 가능
- 입금전표 사용여부는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금융회사 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타점권(당좌수표, 어음 등)에 의한 입금은 제한함

2) 출 금(계좌이체 포함)

- 국고예금 중 관서운영경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며 불가피한 경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출납공무원(국고예금)계좌에서 자동 결제
- CD/ATM 등 자동화기기나 개별적인 전자금융(PC,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출금은 관서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금지
 - 전자금융은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자자금이체(재정자금이체망) 및 부처단위(국방부, 육군 등)로 접속하는 펌뱅킹 등에 대해 허용
- 기타 출금은 각 금융회사의 출금포와 통장을 사용하는 창구 거래 등 금융거래 관행에 따라 처리
- 출금가능 시간은 원칙적으로 각 금융회사 영업시간 이내
 - 한국은행 앞 입출금 거래내역 전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 선택 가능

3) 수수료

- 국고예금 계좌에서 출금하여 타 예금계좌로 이체(타행 이체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 등 출납공무원의 예금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
- 국고예금 계좌로의 입금에 따른 수수료는 각 금융회사의 거래 관행에 따름
 - 다만, 출납공무원이 거래점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다. 계좌 정보(신설·폐지 등) 및 거래내역의 한국은행 앞 전송

- 국고예금 취급기관은 매일의 국고예금 계좌 신설, 폐지 및 입출금 거래 내역을 익영업일 08:30까지 한국은행에 전송하여야 함
 - 당일 신설·폐지가 없더라도 계좌현황정보는 매일 전송하며 입출금 거래내역에는 계좌별 부리적수, 이자율 및 이자금액을 포함

라. 이자 지급

1) 이자율

- 금융회사는 국고예금에 대하여 보통예금 금리수준의 이자를 지급(이자율 변경 시 사전에 한국은행 앞 통지 필요)

2) 이자의 계산 기간

- 국고예금에 대한 이자 계산 기간은 11.1. ~ 4.30. 및 5.1. ~ 10.31. (연 2회)
 - 이자 계산 기간의 초일과 말일이 금융회사의 휴무일에 해당하더라도 이자 계산 기간은 불변
 - 이자 = 적수 × 이율 / 365 (10월미만 절사)
 - 적수산정 기간 중 이율이 변경된 경우 일할 계산 적용

3) 이자의 지급시기

- 국고예금의 이자는 매년 5.15. 및 11.15.에 지급(해당 일이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
 - 이자 계산 기간 말일 이전에 해지된 계좌도 이자는 동일하게 지급함

4) 이자의 지급방법

- 국고예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원가(원금에 가산)하지 않고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 또는 계정의 중앙관서 수입금계좌에 납부하는 형태를 취함
- 한국은행(국고증권실)은 이자지급일(5.15일 및 11.15일)에 금융회사 당좌예금계좌(지정 수입징수관계좌 관할 통할점 예치) 또는 우체국예탁금계좌에서 이자금액을 인출(차기)하여 지정 수입금계좌에 납부
 - 한국은행(국고증권실)은 해당 금융회사 앞으로 국고예금 이자금액을 사전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음
- 이자 지급 후 이자계산에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각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수입금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요청

마. 정 정


- 출납공무원 등의 착오에 의한 정정 요청은 정당 계좌에서 출금하여 착오 출금된 계좌에 입금 처리(통상 입출금 거래와 동일한 절차를 취함)
 - 금융회사의 착오에 의한 정정은 각 금융회사의 예금거래 착오 정정 방법에 따라 처리(취소 후 재입력하며, 필요시 기산일 소급거래 등의 조치 가능)

바. 반 납

- 국고예금 계좌번호가 기재된 국고금반납고지서*와 함께 수납한 국고예금 지출반납금은 국고예금에 입금 처리
 - 지출금반납고지서와 동일한 양식이므로 주의를 요함
- 무통장 입금, 타행환 입금 등 일반예금 처리절차에 따라 입금

서식 9 국고금 반납 고지서 서식

※ 지출관 계좌번호(예:E07891)가 기재된 경우 지출반납금이므로 국고로 수납, 출납공무원 은행/계좌번호(9~16자리) 기재 시엔 국고예금계좌에 입금

반납고지서 재증		우체국 요금후납		
주 소		귀 하		
산 출 근 거	반납고지서경영수증(반납자용)			
1. 2. 3. 4.	납부번호			
	기 능	회 계 연 도	회 계	소 관
			지출관 계좌번호 (출납공무원은행/계좌)	
	반 납 자	성 명 호 (상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신고분	원
			가산금	원
			증가산금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증가산금	원
			납기후 금액	원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수납인 은행 우체국	
				

별첨 1

한국은행 국고통할점 및 담당 지역

통할점명	전화번호 및 FAX 번호	담당 지역
국고증권실	대표전화 : 02-759-4700 담당책임자 : 02-759-4695 FAX : 02-759-4711	서울특별시(강남통할점 담당지역 제외),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강남본부	대표전화 : 02-560-1114 (교환 : 국고담당) FAX : 02-560-118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본부	대표전화 : 031-250-0114 (교환 : 국고담당) FAX : 031-250-0115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오산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군, 여주군, 광주군
부산본부	대표전화 : 051-240-3700 (교환 : 국고담당) FAX : 051-240-3917	부산광역시
대구경북 본부	대표전화 : 053-429-0301 (교환 : 국고담당) FAX : 053-429-036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통할점 담당지역 제외)
포항본부	대표전화 : 054-289-2800 (교환 : 국고담당) FAX : 054-289-2929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광주전남 본부	대표전화 : 062-601-1000 (교환 : 국고담당) FAX : 062-601-1130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통할점 담당지역 제외)
목포본부	대표전화 : 061-241-1000 (교환 : 국고담당) FAX : 061-242-1189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장흥군

통할점명	전화번호 및 FAX 번호	담당 지역
전북본부	대표전화 : 063-250-4000 (교환 : 국고담당) FAX : 063-251-9032	전라북도
강원본부	대표전화 : 033-258-3200 (교환 : 국고담당) FAX : 033- 258-3350	강원도 (강릉통할점 담당지역 제외)
강릉본부	대표전화 : 033-640-0100 (교환 : 국고담당) FAX : 033-640-0164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대전충남 본부	대표전화 : 042-601-1114 (교환 : 국고담당) FAX : 042-601-1200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북본부	대표전화 : 043-220-0550 (교환 : 국고담당) FAX : 043-220-0645	충청북도
인천본부	대표전화 : 032-880-0114 (교환 : 국고담당) FAX : 032-880-0119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제주본부	대표전화 : 064-720-2411 (교환 : 국고담당) FAX : 064-720-2550	제주도
경남본부	대표전화 : 055-260-5114 (교환 : 국고담당) FAX : 055-260-5133	경상남도
울산본부	대표전화 : 052-259-7400 (교환 : 국고담당) FAX : 052-259-7490	울산광역시

별첨 2 주요 국세 납기* 일람표

▪ 납기일이 한국은행 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국세 월별	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세	부가가치세
1	10일		25일 (전년도 2기분 확정신고 납부)
2	10일	28일 (6월말 결산법인 중간 예납)	
3	10일	31일 (12월말 결산법인 신고 납부)	
4	10일		25일 (1기분 예정신고 납부)
5	10일, 31일 (확정신고 납부)	31일 (9월말 결산법인 중간 예납)	
6	10일	30일 (3월말 결산법인 신고 납부)	
7	10일		25일 (1기분 확정신고 납부)
8	10일	31일 (12월말 결산법인 중간 예납)	
9	10일	30일 (6월말 결산법인 신고 납부)	
10	10일		25일 (2기분 예정신고 납부)
11	10일, 30일 (중간 예납)	30일 (3월말 결산법인 중간 예납)	
12	10일	31일 (9월말 결산법인 신고 납부)	